



##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부 셧다운 이후 연방정부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2019년 1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작되어 미 헌정 이래 최장시간으로 길어지고 있는 정부 셧다운 상황에서 임금 및 시간외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연방정부 노동자들이 셧다운 종료 직후부터 바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는 단지 현재 ‘필수적인(essential)’ 또는 ‘예외적인(excepted)’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방정부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 노동자들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많은 연방정부 노동자들이 즉시 필요한 생필품, 월세, 의료비 등을 지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된 수정 및 후속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워 주목을 받고 있다. 미네소타 주 출신 티나 스미스(Tina Smith) 상원 의원은 외주 등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연방정부와 계약이 되어 있는 외주업체 노동자들까지 위와 같은 법안을 확대 적용해야 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안하였다. 또한 하와이 주 출신 브라이언 샷츠(Brian Schatz) 상원 의원과 워싱턴 주 출신 데렉 킬머(Derek Kilmer) 하원 의원은 집주인이나 채권자들이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정부 노동자나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월세나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앞으로 정부 셧다운 이후 연방정부 노동자 및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권리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sup>1)</sup>

1) Vox(2019.1.16), “Federal employees are now guaranteed back pay after the shutdown is over,” Retrieved on January 19th, 2019, <https://www.vox.com/policy-and-politics/2019/1/10/18176849/furloughed-federal-employees-back-pay>

## 미국: 1월 마지막 주의 기록적인 한파, 노동자 안전을 위한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관심 높여

1월 마지막 주 중서부 지역의 기록적인 한파(최저 영하 35도 미만, 체감온도로는 최저 영하 48도 미만)로 인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바 있다. 해당 의무는 직무상 안전 및 건강 관리 법안(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Act)에서 법적 기초를 찾아볼 수 있다. 위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해치는 인식된 위험으로부터 안전



한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노동자들은 ‘선의(good faith)’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일하는 일터가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들은 고용주에게 해당 위험을 최대한 제거하도록 하거나 다른 직무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sup>1)</sup> 최근의 기록적인 한파는 건물 밖에 있을 경우 5~10분 안으로 동상이 시작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출근을 위한 이동 중에도 노동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는

노동자들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출근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된다. 다만 출근을 거부할 경우 시간제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며 급여 노동자(salary worker)들은 추후에 출근하지 않은 시간을 보충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sup>2)</sup> 또한 위스콘신 주에서는 예산 삭감의 일환으로 주 정부 공무원들을 직무상 안전 및 건강 관리 법안으로부터 제외하는 등의 사례들이 존재한다.<sup>3)</sup>

- 1)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Workers’ Right to Refuse Dangerous Work,” Retrieved on February 8th, 2019, <https://www.osha.gov/right-to-refuse.html?fbclid=IwAR3--hniXxeeoqVfBtMMNGodj3hERG677L9g9leBiih63ugYM6XXP2Ck-ug>
- 2) USA Today(2018.12.17), “Can you ask your employer to let you work from home during a winter storm? Ask HR,” Retrieved on February 8th, 2019, <https://www.usatoday.com/story/money/careers/2018/12/17/inclement-weather-policy-employers-required-workers/2312464002/>
- 3) Wisconsin State Journal(2011.2.11), “Highlights of Gov. Walker’s budget repair bill,” Retrieved on February 8th, 2019, [https://madison.com/wsj/news/local/govt-and-politics/highlights-of-gov-walker-s-budget-repair-bill/article\\_3d93e6aa-363a-11e0-8493-001cc4c002e0.html](https://madison.com/wsj/news/local/govt-and-politics/highlights-of-gov-walker-s-budget-repair-bill/article_3d93e6aa-363a-11e0-8493-001cc4c002e0.html)

## 미국 : 2017년 미국 출산율 최근 30년간 최저치 기록

2019년 1월 10일 CNN은 국가건강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에서 발행된 새로운 리포트를 인용하여, 2017년 미국 출산율(여성 1인당 출산 자녀 수)은 1.766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30년 만에 가장 적은 3,853,472명의 신생아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출산율은 2.1명이며, 현재 상황에서는 16%

정도가 모자란다.

먼저, 가장 출산율이 낮은 주는 워싱턴 D.C.로 1.421명, 가장 출산율이 높은 주는 사우스다코타로 2.228명을 기록했다. 사우스다코타는 현재 미국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2.1명)을 유일하게 초과하는 주로, 사우스다코타를 제외한 다른 주는 모두 그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거의 모든 주에서 출산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며 미국 총 인구

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국 대부분의 주가 기록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공공의료협회(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의 수석 디렉터인 Georges Benjamin 박사는 이처럼 낮은 출산율은 미국 사회가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sup>1)</sup>

1) CNN(2019.1.10), "US fertility rate is below level needed to replace population, study says," <https://www.cnn.com/2019/01/10/health/us-fertility-rate-replacement-cdc-study/index.html>

## 스웨덴 : 고용서비스센터 직원 4,500명 해고 결정

스웨덴 고용서비스센터(Arbetsförmedlingen)는 조직의 1/3에 해당하는 인원인 4,500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서비스센터장 미카엘 뢰베리(Mikael Sjöberg) 씨는 이 해고가 어려운 결정이었으며 해고당한 이들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sup>1)</sup>

뢰베리 씨는 Dagens Nyheter와의 인터뷰에서 사민당-녹색당 정부와 중앙당, 자유당이 발의하여 2018년 12월 의회에 통과된 예산안으로 인해 고용서비스센터의 조직개편과 노동자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한 바 있다. 뢰베리 씨는 이 예산안이 고용서비스센터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 정당들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삭감된 예산은 고용서비스센터의 업무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 밝혔다. 이

번 해고는 스웨덴 전역에 있는 고용서비스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어떤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인원을 해고할지는 노조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스웨덴 고용서비스센터는 스웨덴 전역 242개 사무소에 13,500명의 노동자와 430명의 컨설턴트를 두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해고인원은 4,500명으로 전체 직원의 1/3에 달해 당초 예상되었던 2,400명을 훨씬 상회하였다.

고용서비스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으로 인해 서비스센터의 운영예산은 2018년 대비 8억 크로나(한화 약 960억 원)가 삭감되었으며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할당된 예산은 45억 크로나(한화 약 5,420억 원)가 삭감되었다.

1) Arbetsförmedlingen(2018.1.30), Arbetsförmedlingen varslar 4 500 anställda, <https://arbetsformedlingen.se/om-oss/press/nyheter/nyhetsarkiv/2019-01-30-arbetsformedlingen-varslar-4-500-anstallda>



## 스웨덴 : 2018년 노동자 평균 급여 전년대비 소폭 상승

스웨덴 중재위원회(Medlingsinstitutet)는 보고서를 통해 2018년 스웨덴 노동자의 급여 수준이 2017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sup>1)</sup> 2018년 1~11월 기준,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2.6% 상승했는데 2017년에는 같은 기간 동안 2.3% 상승하였다. 한편 2018년 동안 공공부문 노동자 급여는 3.0% 상승하였고 민간부문 노동자의 급여는 2.4% 상승했다.

중재위원회의 발테르 훌텐(Valter Hultén)씨는 현재 스웨덴의 경제호황과 활발한 노동수요가 전반적인 평균 급여 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서는 민간부문에 비해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이 수요의 차이로 인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평균급여가 민간부문보다 높은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1) Medlingsinstitutet(2019.1.30), "Löneutvecklingen till och med november 2018," <http://www.mi.se/press/nyheter/2019/01/loneutvecklingen-till-och-med-november-2018/>

## 핀란드 : 임금정보 공개를 둘러싼 노사 간의 의견 차이

핀란드 노동자 중 2/3는 본인의 임금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핀란드 산업위원회(EK)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66%가 그들의 임금정보 공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핀란드 산업위원회는 지난 1월 1,525명의 (노동가능인구에 속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핀란드 사회·보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는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임금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이번에 핀란드 산업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이 방안의 문제점을 주로 지적하였다. 핀란드 산

업위원회의 연구원 Katja Leppänen은 “임금정보는 노동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 있는 부분이며 임금투명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급여정보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핀란드의 노동조합중앙기구 SAK(Suomen Ammattiliittojen Keskusjärjestö)는 산업위원회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SAK는 다음 의회 회기 때 임금정보 공개안이 무조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SAK 조합원의 2/3가 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중앙기구의 Annika Rönni-Sällinen 씨는 임금정보는 개인정보나 기밀

정보가 아니며 법에서도 그렇게 정의내리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정보 공개가 가져다 줄 순기능, 이를테면 성별임금 차별을 방지하는 역할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란드 산업위원회의 연구원 Katja Leppänen는 노동자들이 이미 임금차별을 비롯한 다양한 차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다룰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

추고 있기 때문에 임금정보 공개는 과한 제도적 개입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산업위원회와 노동조합중앙기구는 고용주가 어떤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급여를 책정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의 목소리를 냈다.

1) Yle(2019.2.11), "Most workers don't want salaries public, says business group," [https://yle.fi/uutiset/osasto/news/most\\_workers\\_dont\\_want\\_salaries\\_public\\_says\\_business\\_group/10640857](https://yle.fi/uutiset/osasto/news/most_workers_dont_want_salaries_public_says_business_group/10640857)

## 베트남 : 정부의 노동안전 프로그램 시행으로 산업재해를 감소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2018년 12월 5일 ‘2016~2020년 노동사회분야 안전강화 프로그램(899/QĐ-TTg, 20/6/2017)의 평가 및 의견 수렴’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것은 베트남 정부가 노동안전을 위해 고위험 산업(광공업, 건설업, 금속산업, 무역, 화학업) 분야에서 안전프로그램과 교육을 지원하여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을 줄이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동안 지원 대상을 선별해 노동환경(인프라)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조언하며 이와 관련된 정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동안전 컨설팅,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환경 개선 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로 2011~2015년 대비 2016~2017년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평균 10.77% 감소하였고

이는 당초 예상치를 5% 이상 초과 달성한 것이다. 또한 2018년 10월까지 4,500개 이상의 기업에 해당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이 중 400여 개 이상의 기업에는 국제표준에 해당하는 노동안전기준을 적용하였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고위험군 노동자 6만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전국 63개 시도에 있는 40여 개의 공예품마을, 600개의 협동조합, 5,000여 개의 중소기업, 농업분야 2,000명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국방부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군인(군무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였는데, 그 결과 연평균 산업재해율 11% 감소, 사망자 수 8.32% 감소, 중상자 감소도 19.77%에 이르렀다고 국방부 대변인은 밝혔다. 위 세미나의 참석자들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교육시간 조정, 중앙정부의 프로그



램 관리 감독 강화와 노동 및 고용 보험기금을 이용 한 추가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sup>1)</sup>

1)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2018년 12월 5일자 뉴스, <http://www.molisa.gov.vn/vi/Pages/chitiettin.aspx?IDNews=28615>

### 베트남 : 음력 설 명절의 상여금

베트남 최대 명절인 음력 구정 설 연휴인 텃(Tết)은 노동관계에서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통 설 이후는 이직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이직을 고민해 온 노동자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설 상여금을 받은 노동자들이 설 상여금을 수령한 후 이시기를 이용하여 다른 직장을 구하는 편이다. 기업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노동자들은 설 상여금으로 자신의 한 달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받는데, 일부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설 상여금을 설 전후로 나누어 지급하기도 하고 약속했던(단체협약상)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한 달치 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13월의 월급인 설 상여금에 부과되는 세금

이나 각종 공제금과 관련된 정보를 얻지 못한 노동자들도 많아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 우선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설 상여금은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추가적인 사회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베트남 노동법 제105조, 정부 행정해석(560/LDTBXH-BHXH)). 이 규정에 따르면 노동자의 근무 중 식사대, 지원되는 유류비, 통신비, 통근비, 주거비와 비정기 상여금은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 상여금은 정상적인 임금(급여)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설 상여금에 대해 소득세는 부과한다(베트남 소득세법(2012) 제3조).<sup>1)</sup>

1)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기관지 바오전신, 2019년 2월 15일자 및 동 기관지 2019년 1월 19일자 뉴스, <http://baodansinh.vn/tien-luong-thang-thu-13-co-tinh-dong-bhxh-khong-d90835.html>  
<http://baodansinh.vn/nhan-thuong-tet-phai-dong-bao-nhie-u-tien-thue-d89242.html>